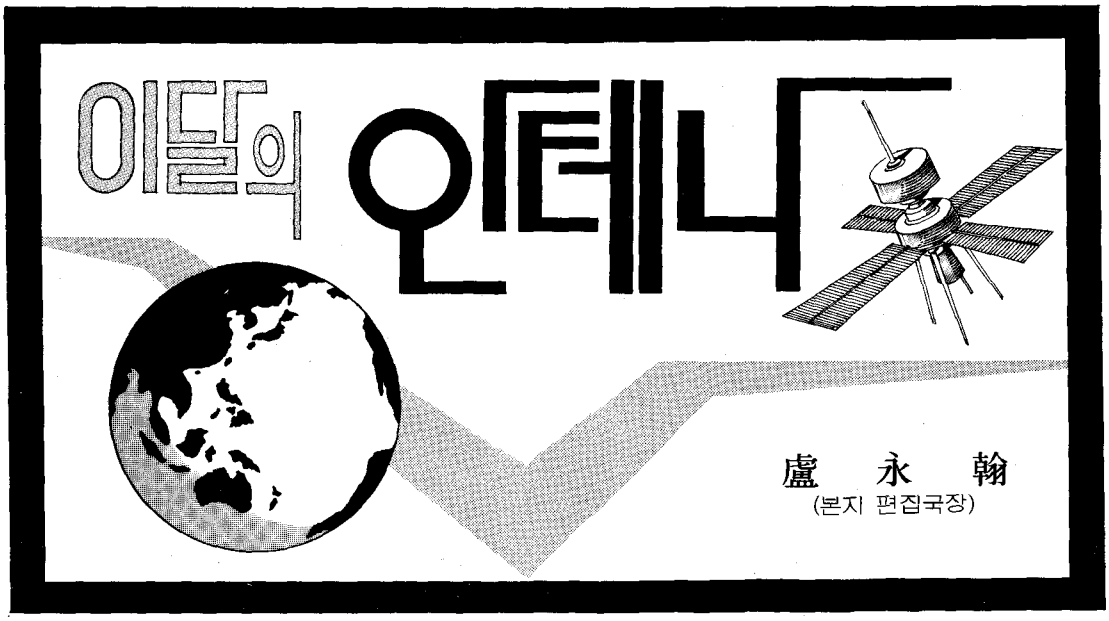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축사의 의무소독

농수산부는 300m² (약 100평) 이상의 축사시설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이상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방역관이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농수산부고시 제 85—5 호로 지난 4월 11일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5월초에는 개정 공포할 계획이다.

이법이 공포되면 축사내는 업자가 자율적으로 철저히 소독하므로써 현재 업계의 관심이 되고있는 보사부에서 주관하는 소독대행업체를 통한 의무소독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본 규정에 의하여 적용을 받게되므로써 양축가의 의견이 대폭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100평이상의 계사에서는 매월 1회가 아니라 수시로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작업은 필요없고 다만 가축방역관의 확인만 받으면 된다.

1. 법령명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2. 개정의 주요내용 및 취지

첫째 : 축사시설 300m² 이상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이상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실시여부를 가축방역관이 확인토록 하여 양축농가의 자율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가축질병의 발생 및 만연을 방지토록 규정하였음(안 제 4 조)

둘째 :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 지역에서 수입된 것이나 검역증 없이 수입된 검역물에 대하여는 반송, 소각 및 매몰하여야 할 기간을정하였는바, 방역상 긴급을 요할 경우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은 15일, 축산물은 30일로 규정함으로써 검역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5조의 2).

세째 : 수입 화주가 불분명하여 검역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검역관이 검역을 완료한후 검역

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체화를 방지하여 검역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8조).

뉴캣슬병 발생주의보 발령

농수산부는 4월 18일 닭의 뉴캣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 하였다.

뉴캣슬병에 대하여는 해방이후 40년간 가장 무서운 닭질병으로 알려져 왔으며 가금협회때부터 양계강습회나 월간양계지를 통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되어 왔었다. 그러함에도 최근에 와서 특히 브로일러의 경우에 성장이 빨라져 요행을 바라고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발병하면 삼계탕용이나 씨미로 팔아치운다는 뱃심으로 예방접종을 하지않다가 닭장사를 부르기전에 폐사하거나 닭장사가 운반도중에 폐사하기가 일쑤이고 도계과정에서도 방혈이 제대로 되지않아 상품가치가 떨어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위험한 곡예를 하지말고 꼭 예방접종을 시행할것을 권하며 이번 농수산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과정표를 소개한다.

○뉴캣슬병 예약방접종 과정표

구 분	예방약 종 류	접 종 방 법	접종시기, 주령, 접종량				
			1 차 (1주령)	2 차 (2주령)	3 차 (4주령)	4 차 (8주령)	보강접종
육 계	생 독	음 수	5 - 10㎖	10 - 20㎖	20 - 30㎖		
산란계	생 독	음 수	상 동	상 동	상 동	40㎖	매 2개월마다 40㎖
	사 독	근 육	※ —	—	—	—	매 3개월마다 1㎖

※ 4차 접종까지는 생독으로 음수접종

양계업의 등록

양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양계산물의 가격 불안정이라고 한다.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요행만을 바라는 기대심리가 높아질수 밖에 없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불투명한 이유중의 하나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들고 있다. 경제단체장들이 투자를 할수 있는 여건 즉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생산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산란계 3만수, 육계 1만수, 종계 1천수 이상을 사육할 때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산란계 3만수와 육계 1만수는 형평이 맞지 않는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브로일러산업이 채란계쪽보다 훨씬 불안정하기 때문에 닭고기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만수 이상은 등록시켜야 한다면 이해가 될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켜 주니 규모의 확장이 수익의 증대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정부는 생산조절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이정도 고통쯤은 참아야 한다.

이제 과거처럼 생산이 부족하여 값이 오르고 물가당국으로부터 양계산물을 수입해서 값을 내리겠다는 압력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값이 폭락하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여 생산성만 높이면 일정 소득은 보장된다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이다. 생산조절 명령만 잘 지키고 관측홍보를 귀담아 들으면 된다.

생산조절이나 가격안정같은 문제는 따지고 보면 업계가 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닭수수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 등 경영권을 포기하고 정부에 맡기게 된 데에는 업계의 책임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제 5월1일부터 등록제는 실시되었다. 이 제도 안에서 양계산업의 발전방향을 찾아야 하겠고 이 제도가 양축가들이 원하는 가격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양계산업의 경영자가 된 정부당국의 경영능력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설사 가격은 안정이 된다고 해도 제도권 내에서의 안주가 얼마나 불안정한 태풍전야의 고요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제도내에서 끊임없는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으로 생산성과 유통능률을 높이고 소비촉진을 해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표준율 확정

제2의 세율이라고 불리우는 84년도 사업분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었다.

소득표준율이 낮아져야 기장하는 업체들도 모든 일이 수월하기 때문에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소득표준율 자체가 기장을 하지 않는 업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는 외형이 큰 업체부터 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저, 기본, 최고율의 3단계로 소득표준율을 정하고 기장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유통구조가 점차 근대화되어감에 따라 계산물 판매에 있어 영수증 처리도 가능해지리라고 생각된다.

사업소득

○축산업

일련·코드번호	종 목 · 구 분	최저율 (이하)	기 본 율 (이상) (이하)	최고율 (이상)	준용종목 및 적용범위
11 CX01001	낙농 및 육우사육	15,000 6.3	19,000-126,000 8.0	173,000 10.9	○우유 및 우유제품을생산하기 위하여 젖소 및 젖양을 기르는 낙농업(낙농사업체에서 우유를 살균하여 병에 넣어 시판하는 경우 포함)과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비육우사육장
12 CX02005	양돈	12,000 8.0	15,000-101,000 10.0	138,000 13.6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 사육업
13 CX03009	양봉	6,600 14.3	8,300- 56,000 18.0	77,000 24.7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업
14 CX09011	기타 가축 및 가금사육 양계	12,000 8.0	15,000-101,000 10.0	138,000 13.6	
14 CX09029	기타가축 및 가금사육 사슴	8,000 11.6	10,000- 69,000 14.5	95,000 19.9	

14 CX09095	기타가축 및 가금사육 기타	9,600 10.0	12,000- 80,000 12.5	110,000 17.1	○젖소, 젖양, 비육우, 돼지를 제외하고 고기, 모피, 털등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사육법 ○고기와 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오리, 거위, 칠면조 등을 사육하는 가금사육업(양계제외)
51 HA10003	배합사료	26,000 3.5	33,000-226,000 4.5	307,000 6.1	○단미사료

○도매업

145 KA02009	가축	40,000 2.4	50,000-337,000 3.0	460,000 4.0	○가축 및 가금
146 KA03011	고기 고기부산물	34,000 2.7	43,000-288,000 3.5	394,000 4.7	○식육부산물
146 KA03029	고기 고기	30,000 3.1	38,000-251,000 4.0	345,000 5.5	○소, 돼지, 닭 등의 식육

○소득표준율 차등율 계산예

수입금액구간	소 득 표 준 율	사 업 자 예	
		수입금액	소 득 표 준 율
17,000천원이하	5.6	14,359, 785원	5.6
17,000천원초과 21,000천원미만	$7.0\times\frac{\text{각사업자의 수입금액}}{21,000\text{천원}}$	19,875,694원	6.5 • $\frac{19,875,004}{21,000,000}=0.94$ (소수세자리 절사) • $7.0\times0.94=6.5$ (소수두자리 절사)
21,000천원이상 144,000천원이하	7.0	85,957,000원	7.0
144,000천원초과 197,000천원미만	$7.0\times\frac{\text{각사업자의 수입금액}}{144,000\text{천원}}$	167,158,959원	8.1 • $\frac{167,158,959}{144,000,000}=1.16$ (소수세자리절사) • $7.0\times1.16=8.1$ (소수두자리 절사)
197,000천원이상	9.5	200,000,000원	9.5

• 계산결과 최저율보다 낮은 율이 산출되는 경우→최저율을 적용함
• 계산결과 최고율보다 높은 율이 산출되는 경우→최고율을 적용함

자동급이기(給餌器)시설용 케이지 환풍기제조

소득1264-1715(84. 5. 21)

〔質疑〕 가축사육에 필요한 자동급이기 시설용 케이지, 환풍기등을 제조하여 축산업자에게 판매하는 업의 소득표준율?

〔回信〕 83소득표준율표상(일련번호 : 103) 제조·농업용 기계 장비, 수공구를 적용하는 것이나, 동제품을 농업용 장비로 사용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